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 마련 〉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67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6.
3. 회부연월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함.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최대한 개설할 수 있어야 하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가 부족한 과목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수업을 개설하기가 어려움.

이에 학교의 장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u>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공동교육과정이란 생의 과목 선택권 및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함.

공동교육과정의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제7차 교육과정(1997)인데, 당시 교육과정에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

교의 이수도 인정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두었고, 해당 지침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한편,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및 학교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고, 2024년 기준 4,723개의 과목에 5만 7,819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됨.

<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

구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참여 학생 수(명)	44,362	52,838	58,792	62,329	58,485	63,750	57,819
개설 과목 수(개)	3,032	3,787	4,370	4,933	4,997	5,478	4,723

자료: 교육부

현재 법령상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고, 국가교육위원회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는 지침에 따라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온라인을 통한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방송·통신수업 등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2항과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운

영되고 있으며, 온라인학교의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¹⁾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미비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고교학점제 특성상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제공해주어야 하지만, 지역 간 교육격차·교사 수급의 어려움·과목의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각 단위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그 대안으로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특히, 개정안의 경우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근거만 마련하고 있을 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

다만, 공동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부터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고 고교학점제의 운영과 별개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386호)

고교학점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보다는 교육과정에 관한 제23조(교육과정 등)²⁾에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근거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공동교육과정의 정의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관적인 해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예시) 학교의 장은 학교 간 연계·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와 같이 법률 규정만으로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법률 근거 마련은 공동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 중 하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5항³⁾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³⁴⁾에 따라 법 제23조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교육과정(고시) 및 학칙 등으로 위임된 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추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일반적인 위임입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6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